

2021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0집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일러두기 |

『2021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20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장 부패 행위 신고사건

1. 2021년 부패 행위 신고사건

1. 정부연구과제 참여기관의 연구비 편취 의혹	10
2. ○○부 공무원의 특권면제 남용 등 부패 의혹	11
3. 사립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시공업체 선정 관련 부패 의혹	12
4. ○○부 공무원 부동산투기 부패 의혹	13
5. ○○기념관 인명사전편찬 사업 원고 집필료 편취 의혹	14
6. 공직유관단체장의 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패 의혹	15
7. 재활용처리업체의 공적예산 편취 의혹	16
8. ○○군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17
9. 시설직 공무원의 이권개입 의혹 등	18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0. ○○통신망 운영비 예산 편취 의혹	20
11.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21
12.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의 금품수수 등 부패 의혹	22
13.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의혹	23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1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29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편취 의혹	30
3. 정부출연 연구과제비, 육아휴직 급여 편취 의혹	31
4.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32
5.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33
6. 연구개발비 편취, 횡령 의혹	34
7.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5
8. 장애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 의혹	36
9. 성폭력 상담소 보조금 횡령 의혹	37
10.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의혹	38
11. 양육수당 등 부정수급 의혹	39

1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0
13.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 등 편취 의혹	41
14.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42
15. 콘텐츠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3
1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4
17.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45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8. 문화개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9
19.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0
20. 고용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51
2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1)	52
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2)	53
23.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4
24.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55
25.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편취 의혹	56
26.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57
27. 경영이양보조금 편취 의혹	58
28.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59
2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60
3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 등 의혹	61

제3장 공익신고 사건

1. 2021년 공익신고 사건

1. 노인의 금품 목적 외 사용 의혹	71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의혹	72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위반 의혹	73
4.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의혹	74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5.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77
6.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78
7.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79
8.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 의혹	80
9. 명품수산업체의 상표법 위반 의혹	81

10.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의혹	82
11.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혹	83
12.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의혹	84
13. 염소 불법 도살 행위 의혹	85
14. 수입 스포츠 테이프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	86
15.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 의혹	87
16. 교차로 통행방법 등 위반 의혹	88
17.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 신고	89
18.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 등 위반 의혹	90
19. 병원의 허위 처방전 등 발급 행위 의혹	91
20. 무신고 숙박업 운영 의혹	92
21. 산부인과병원의 아동학대 등 의혹	93
22. 건축법 위반 행위 의혹	94
23. 가축분뇨 불법 처리 의혹	95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96
25.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 의혹	97
26. 폐기물 불법 소각 의혹	98
27.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시설기준 위반 의혹	99
28. 도로쓰레기 불법 투척 의혹	100
29. 불법 재하도급 의혹	101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 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단가 조작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추가지급)	107
2.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8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9
4.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0
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1
6.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2
7.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3
8. 「농업소득직불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4
9.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5
1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6
1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7

12.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8
13.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9
14.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0
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일부지급)	121

2. 2021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16.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5
17.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6
18.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의 원산지 및 KS인증 허위 표시 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7
19.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8
2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29
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30

3. 2021년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22.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33
---	-----

4. 2021년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사례

23. 「장애인복지법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137
-------------------------------------	-----

제5장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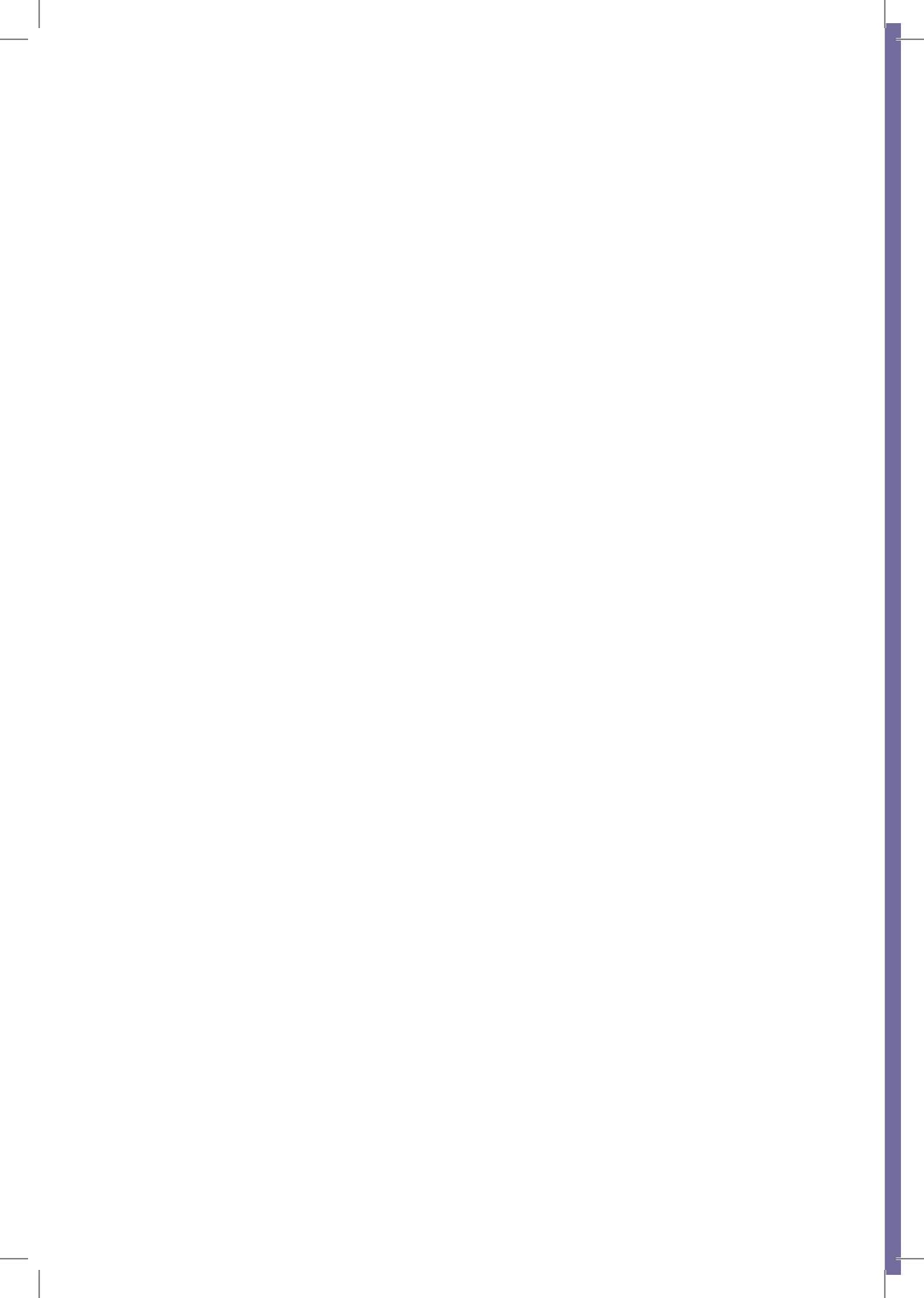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43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49
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57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63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1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1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정부연구과제 참여기관의 연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20. 1.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3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여비를 출장신청서 허위 작성 및 중복 신청 등의 수법으로 발주처에 청구하고 지급받아 ○○원에 해당 금액 상당의 예산 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편취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사업비 불인정 내역 확정, 환수 등 행정조치 실시(66건, 1,500만 원)
※ 통보일자 : 2021. 4. 1.
- 경찰청 조사결과, 편취 범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 통보일자 : 2021. 4.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착안사항 : 출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 확인

2. ○○부 공무원의 특권면제 남용 등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21. 2. 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27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에 있지도 않으면서 ○○정부를 속여 면세 혜택을 이용해 유류세를 환급받는 등 특권면제를 누린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사기 혐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특권면제 남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해외 체류 시 공무원 가족의 신분에 관한 규정 미비, ○○부 제도개선 필요,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어 무혐의
 - ※ 통보일자 : 2021. 8. 13.
 - 경찰청 조사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불입건 결정
 - ※ 통보일자 : 2022. 2.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착안사항 : 유류세 환급 내역, 복무 내역 등의 교차 확인

3. 사립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시공업체 선정 관련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52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사립대학교 이사장 및 주요 보직자들로 해당 사립학교 글로벌캠퍼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패의혹에 대한 수사와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등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작 및 특정업체 선정에 대하여 관련자 수사의뢰 및 중징계 조치 등
 - ※ 통보일자 : 2021. 10.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착안사항** : 대학교 입찰현황, 평가서 작성 과정 확인 등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

4. ○○부 공무원 부동산투기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21. 4.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83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총 13억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 투기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농지법 위반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여부를 위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7.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57조 벌칙
• 착안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사항 등 교차 확인

5. ○○기념관 인명사전편찬 사업 원고 집필료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21. 3. 2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62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현직 ○○기념관 직원 등으로서, 2016년 ○○기념관 편찬사업의 집필료 등을 부당수령 하였다가 모두 환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다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원고를 제출한 다음 명의대여자 등이 집필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송금받은 집필료를 다시 돌려받아 편취한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처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당수령이 인정되고, 사기죄 등 해당될 소지가 높으나 계좌추적 불가 등 조사권이 없어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조사할 필요 있음
 - ※ 통보일자 : 2021. 5. 6.
 - 경찰청 조사결과, 업무상배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16명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착안사항** : 제출된 원고 간 비교, 집필료 송금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대여 및 부당수령 확인

6. 공직유관단체장의 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21. 3. 2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63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용차를 휴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서장의 성과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운전원이 전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부정수급 확인, 예산 환수 등 조치, 성과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 등을 수정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다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였으나, 의결절차 없이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담당자 문책 요구
 - ※ 통보일자 : 2021. 5.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 “부패행위”, 제59조 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휴일 전용차 사용 명세 등 서류 확인을 통한 사적 이용 확인, 성과평가 절차 및 보고과정 등을 통해 의혹 확인

7. 재활용처리업체의 공적예산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9. 3. 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73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청소대행을 맡고 있는 10개 업체로부터 혼합재활용품을 납품 받으면서 계근을 1회만 하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와 수거원 2명의 무게를 재활용품과 함께 측정하여 예산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업무의 개선 필요, 사기 등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계근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과다지급금 환수, 선별업체 관리감독 및 선별처리 용역비용 지급 업무처리 소홀이 확인되어 부서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21. 7. 19.
 - 경찰청 조사결과, 과다 지급받은 것은 확인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 통보일자 : 2021. 10. 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착안사항 : 계근장 CCTV 촬영 자료를 통한 계근 부정행위 확인

8. ○○군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2분과위원회(2021. 6. 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20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구입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은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부동산실명법 혐의 등으로 4명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6.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농지법 제5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 착안사항 :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

9. 시설직 공무원의 이권개입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21. 7. 1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49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빌라에 대해 학교장 사택용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직접 재계약을 체결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수목전정 작업 관련 폐목처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이권 개입, 특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교육청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본인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 지하수개발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수목 전정 작업 관련하여 폐목 처리비가 과다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 2021. 10.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착안사항**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공사 관련 서류를 통한 확인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0. ○○통신망 운영비 예산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9. 6. 2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162호

- 1. 의안개요**
- ○○사 대표인 피신고자가 ‘○○통신망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와 공모하여 통화료, 유지보수비 등을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
- 2. 의결이유**
- 공사 관리감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감사 등이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 및 ○○위원회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의 위탁대리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주체가 아니며, 다만 △△의 위법여부는 금지행위의 사실조사 및 조치의 소관기관인 ○○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통보일자 : 2020. 8. 11.
 - ○○위원회 조사결과, △△사에 대해 과징금 약 3억 9천만 원 부과 및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의 즉시 중지,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
 - ※ 통보일자 : 2020. 10.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 **착안사항** : 협약서 및 요금표 등 신고자 제출 자료를 통해 월 통화료가 요금제의 상한선을 초과한 정황 등을 확인

11.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20. 4. 2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15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업체 대표로서, ○○공단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사업의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들을 허위로 기재한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주처에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공단에 계약금액 680억 원 상당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는 자들이 포함된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경영상태확인서를 ○○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인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 및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자격증 대여 혐의자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4.
 - ○○부, 소송 진행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소송 결과 확인 후 종결 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착안사항** : 허위기재된 직원들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12.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의 금품수수 등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20. 10. 12.)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34호

- 1. 의안개요**
 -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인 피신고자는 시공업체로부터 매월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업체의 공사 금액을 증액하여 주거나,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의혹

- 2. 의결이유**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 및 정비사업의 부적정한 감독, 공사비 집행에 대한 조사, 제재 및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시공업체 직원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3.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불법거래 확인

13.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20. 12. 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8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원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를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횡령, 기술개발비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원으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원 조사결과, 기술개발지원금 1억 5천만 원 환수조치, 사기·위계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 및 3년의 사업참여제한 등
 - ※ 통보일자 : 2021. 2. 3.
 - 경찰청 조사결과 기술개발지원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6.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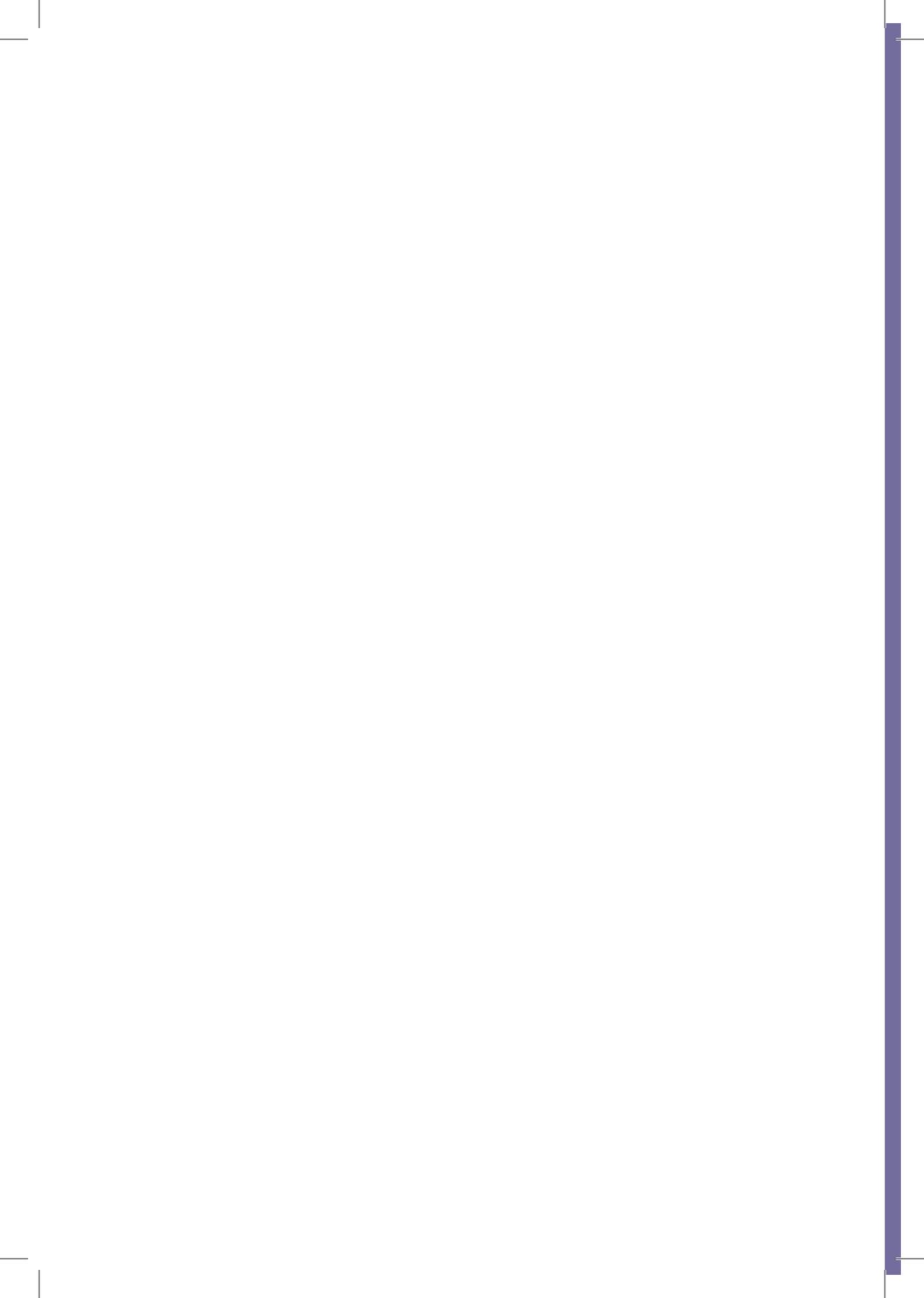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등을 대조하여 허위 지출 여부 확인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1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1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1.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4호

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2는 202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시 소재 이○○ 카페에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 6인을 팬○○(주) 및 하○○(주) 사업장의 전일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로부터 중소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2는 202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시 소재 이○○ 카페에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 6인을 팬○○(주) 및 하○○(주) 사업장의 전일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후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시로부터 약 2,782만 원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2명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2. 2. 16.
- ○○시 조사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착안사항 : 메신저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근무한 곳을 확인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1.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5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재직중인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내방송시스템으로 타각하여 입력하게 하고, 누락된 경우 전산팀에서 임의로 조작하여 ○○부에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주)○○홀딩스에 재직중인 직원 31명에 대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근태를 입력하게 하고, 누락된 경우 전산팀에서 이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 ○○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20. 7. ~ 8.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약 4,844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21. 7. 23.
 - ○○부 조사결과, 약 1억 4천만 원 환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 ※ 통보일자 : 2021. 5. 1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착안사항** : 출근기록부 및 업무메일 수·발신내역 등을 통해 근로내역 확인

3. 정부출연 연구과제비, 육아휴직 급여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1.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21호

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원으로부터 2017. 5. 30. ~ 2019. 12. 31.까지 정부출연금 7억 3,300만 원을 지원받아 「방화근층에 무해하고 사용 간편한 천연유래물질을 이용한 ○○용 ○○제 개발 및 사업화」 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 등록의 수법으로 인건비 9,146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신고자1·2는 공모하여 피신고자2가 2019. 1. 1. ~ 2019. 11. 10.까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하여 육아휴직 급여 1,257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김○○와 이○○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원으로부터 인건비 9,146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과 공모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257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1,2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9. 27.
 - ○○부 조사결과, 육아휴직 급여 약 2,014만 원 환수 및 지급제한
 - ※ 통보일자 : 2021. 12. 31.
 - △△부 조사결과, 인건비 약 4,785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2. 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착안사항 : 연구과제 실적·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내역 확인

4.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2. 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24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2020. 3~6, 9, 10. 등 총 6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동 기간 유급휴가 대상으로 결정된 상당수의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 사실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로부터 금액미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2020. 3~6, 9, 10. 등 총 6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유급휴직 대상으로 결정된 상당수의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7. 15.
 - ○○부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액 총 약 2억 5,286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1. 6. 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착안사항 : 실제 출근근무표와 관계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

5.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2. 22.)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39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년경부터 LED조명 등을 아파트 등지에서 판매 및 시공업을 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통해 매월 1,500~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얻는 소득의 일부를 삼촌인 나○○의 통장으로 빼돌리고, ○○시에 있는 아파트와 승용차를 처제 명의로 돌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년부터 포터2 윈바디 차량에 LED조명 등을 진열하고 아파트 등지에서 판매 및 시공업을 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통해 매월 1,500~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삼촌인 나○○의 통장(○○, ○○○-○○-○○○)으로 빼돌리고, ○○구 ○○동에 있는 ○○아파트와 승용차(그랜저TG, ○○나○○호)를 처제 명의로 돌렸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6.부터 2020. 12. 14. 까지 ○○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2,561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외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2. 9.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 **착안사항** : 피신고자 녹취록 및 통장거래 내역을 통한 소득 확인

6. 연구개발비 편취,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45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원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9건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 후,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타인의 학위증을 위조하여 피신고자2의 최종학력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원으로부터 2009. 6. 1.부터 2014. 5. 31.까지 '지능형 센서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로 연구개발비 4억 8,943만 원을 지원받는 등 9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지급된 연구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타인의 학위증을 위조하여 피신고자2의 최종학력을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4. 7.
 - ○○부 조사결과, 연구개발비 약 9,316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2. 2. 16.
 - △△부, 조사 중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등
- 착안사항 :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통장내역 확인 및 위조된 학위증의 문제점 확인

7.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46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계약직 근로자 임○○을 정기적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로부터 청년인재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임○○의 근로계약서)에서 임○○이 계약직 근로자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신고자는 202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계약직 근로자 임○○을 정기적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로부터 약 2,195만 원의 청년인재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6. 9.
 - ○○도 조사결과, 청년일자리 지원금 약 2,191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7. 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착안사항** : 실제 근로계약서와 허위로 제출된 근로계약서 비교 검토

8. 장애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48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 5.부터 2020. 12.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단체운영비 중 일부를 자신의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월 5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2020. 4.부터 2020. 5.까지 협회 산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장의 직책보조비 80만 원을 강제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갈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복지협회를 운영하면서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12차례에 걸쳐 예산 내역에도 없고 지급근거도 없는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협회 산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장에게 강요하여 ○○시로부터 지급받은 센터장 직책보조비 80만 원을 갈취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그 밖에도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매월 지원받은 수당 9만 원을 강제로 되돌려 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 12.
 - ○○도 조사결과, 보조금 약 2,730만 원 환수 및 주간보호센터 개선명령·주의
 - ※ 통보일자 : 2022. 2. 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공갈),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착안사항 : 보조금 집행지침 및 계좌 이체내역 확인

9. 성폭력 상담소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49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 7.경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부임한 후 2020.까지 ○○부, ○○도 등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 수를 부풀리고, 강사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부터 2020.까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6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내부강사가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극단, 외래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비 중 10~20%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도 및 ○○시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음. 또한, 내부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고 시설 운영비로 활용하라고 규정한 ○○부 지침은 보조금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2. 9.
 - ○○부 조사결과, 인건비 약 3,093만 원 환수 및 보조사업 참여제한
 ※ 통보일자 : 2022. 1. 25.
 - ○○도 조사결과, 보조금 약 4,459만 원 환수 및 담당공무원 4명 훈계
 ※ 통보일자 : 2021. 11. 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착안사항** : 상담소 내부직원 출장내역과 프로그램 내부강사 진행내역 비교, 상담소 운영일지 및 보조금 정산 보고서 검토

10.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50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테크와의 계약을 통해 (주)○○테크의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월 5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2019년 6월 이전에도 (주)○○에서 전장영업을 담당하여 금액미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주)○○테크와 (주)○○에서 전장영업을 담당하여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2016년 경 강○○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운행중인 차량(제네시스 G70, 53하8○○3)이 있는 사실 등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2017. 6.경부터 2019. 12.경까지 ○○도 ○○시 및 △△도 △△시로부터 약 467만 원의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2. 4. 11.
 - ○○도 조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금 약 437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5. 18.
 - △△도 조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금 약 2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2. 1. 1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보조금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신고자의 근로내역 및 차량 등의 재산을 확인

11. 양육수당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52호

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경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법인 직원으로, 2014. 4. 26.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배우자 손○○과 슬하에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자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박○○과 박△△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피신고자 본인과 박○○은 국내의 피신고자 모친의 주소지에, 박△△은 장인의 주소지에 주민 등록하여 마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3. 6. 25.부터 2021. 1. 25.까지 총 1,46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하고 국민건강보험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과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정황이 확인되고 배우자는 2014. 4. 2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바, 이들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 역시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것인데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자녀들의 외국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외국 체류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013. 6. 25.부터 2021. 1. 25.까지 총 1,46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 한 의혹이 상당하고, 피신고자의 경우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및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바,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21. 7. 2.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와 가족 모두 '16. 6. 이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됨
※ 통보일자 : 2022. 1. 7.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첫째 자녀가 국내체류 기준에 미달하여 30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7. 23.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둘째 자녀가 국내체류 기준에 미달하여 52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5. 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착안사항 : 피신고자 일가의 주민등록 현황과 관계기관 담당자 진술 청취를 통해 부정수급 정황 확인

1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4. 12.)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72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의 사무처장으로,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받아 2020. 3.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나의○○, 나의△△ 2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설기관 자립생활센터 직원 2명이 실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을 지급하고, 지급한 돈을 후원금 형태로 돌려받아 560만 원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조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2020. 3. 1. - 같은해 12. 31. '나의○○, 나의△△ 2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립생활센터 직원 김○○, 조○○이 실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강사비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명의 강사비 560만 원 횡령한 의혹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8. 26.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 검토

13.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 등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4.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81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개인별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비용을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12개 국립대학의 소속 교직원 등 다수가 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의 개인별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제출하거나 ○○부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시간 내 학생지도활동을 수행하고, 통상 업무를 실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억 원의 학생지도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의 참여 없이 교직원의 편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0. 2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 착안사항 : 신고자·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부정수급 내역 확인

14.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21. 5. 2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91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년부터 2020.까지 ○○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의 테니스대회를 운영하면서 피신고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운영요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심판수당, 인건비, 행사진행비 등 약 1,242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하였으며, 출연금 등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100만 원, 지급 근거가 없는 지도자 처우개선비 2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출연금 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아 테니스대회 운영하면서 피신고자들의 친인척과 지인을 행사요원에 허위 등록하여 관련 수당을 보조금으로 약 1,242만 원의 보조금 지출하였으며, 2019. 12.경 협회 출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하였으며, 지출 근거가 없는 처우개선비 200만 원을 김○○ 등 4명에게 부정하게 지급하는 등 총 1,542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1. 5.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착안사항 : 피신고자 친·인척관계 및 출연금 집행 규정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내역 확인

15. 콘텐츠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6. 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94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3D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서류를 조작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콘텐츠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3DTV’, ‘○○트론’, ‘○○꾸러기’, ‘○○ 대모험’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동 고시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허위의 내용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꾸며, 한국○○진흥원으로부터 총 9억 3,14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0. 28.
- ○○원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원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참고인 진술을 통해 부정수급 정황 확인

1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7. 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18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부부로서, ① 부인인 ‘나○○’은 담임교사로서의 보육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액 미상의 담임교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② 2020학년도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아동 등하원 시간을 부정 입력하여 금액 미상의 보육료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③ 퇴직 보육교사의 면직일 또는 근무일수를 다르게 하여 금액 미상의 보육교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로부터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담임교사로서의 보육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나○○’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6. 7.부터 2020. 4.까지 담임교사 보조금 1억 7,172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아동 하원 시간을 부정 입력하여 금액 미상의 보육료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퇴직 보육교사의 면직일 또는 근무일수를 다르게 하여 금액 미상의 보육교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6. 7.부터 현재까지 ○○시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이상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0. 20.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벌칙),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 착안사항 : 피신고자와 내부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통해 혐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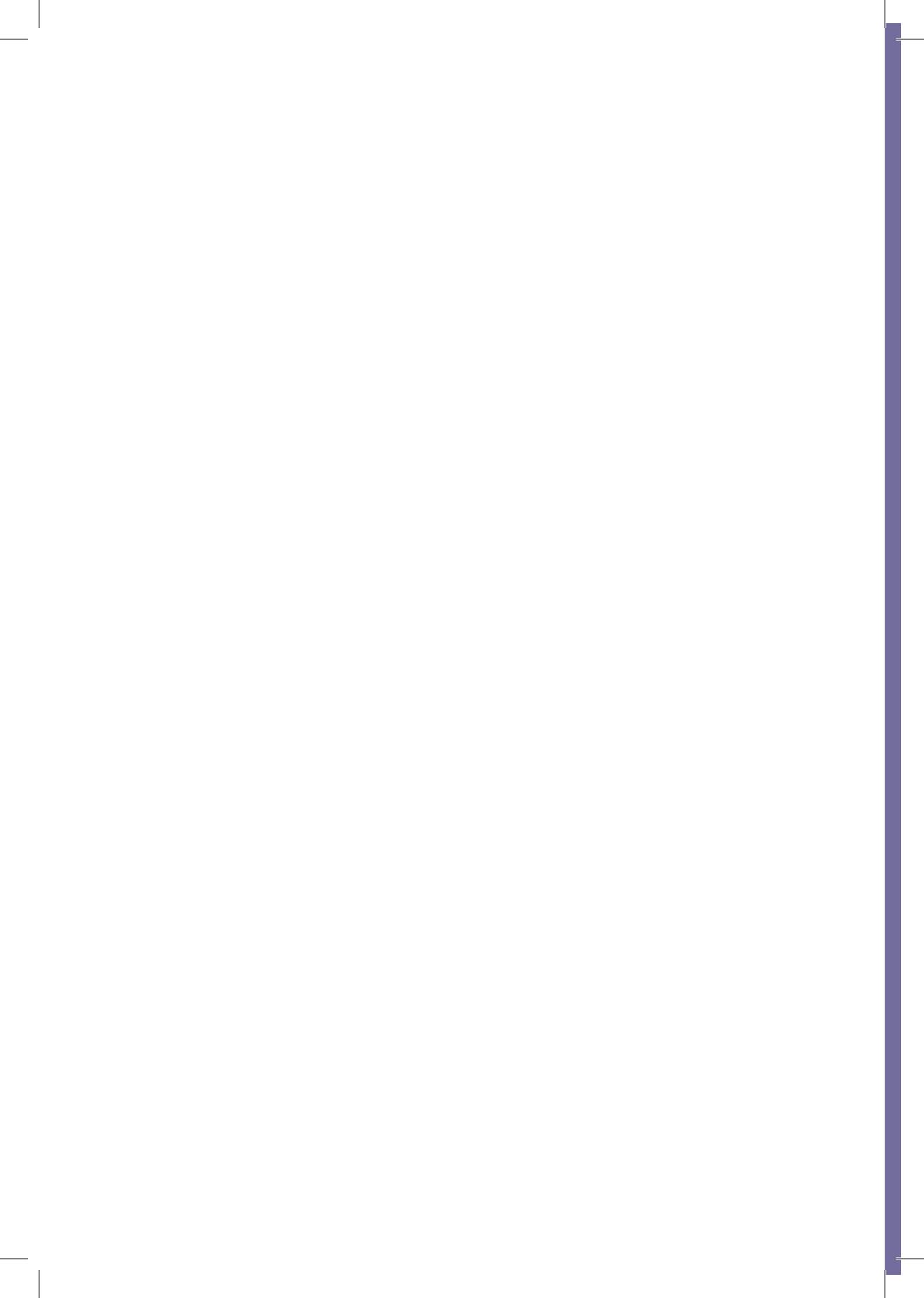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17.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1. 9. 2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53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경부터 2021. 9. 현재까지 학교우유급식사업의 우유급식 공급 업체로 참여하면서 사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백색우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색우유보다 단가가 낮은 가공음료를 제공한 뒤 백색우유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 공급 수량보다 횡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백색우유를 타 업체에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실태조사에서 피신고자가 2019~2020년 사업 지원대상자들에게 백색우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가공음료를 공급한 뒤 백색우유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 공급 수량보다 횡수를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약 1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2019~2020년 이외에도 2017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또한, 계약(학교)과 보조금 집행(시·도)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체계 문제가 확인되므로 관리체계 명확화, 공급방법 변경 등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부,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청취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정황 확인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8. 문화개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3. 1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74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8. 5.초부터 2018. 12.말까지 한국○○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정부출연금 2억 8천 2백만 원이 지원되는 ‘예술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직원 김○○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개발비(내부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2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실제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연구수당) 약 3,3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9. 5. 29.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연구개발비 약 7,164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4년
※ 통보일자 : 2021. 1.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되돌려 받은 피신고자 명의 계좌 확인

19.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3. 1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75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3경부터 2018.11경까지 ○○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면서 학습근로자들에게 OJT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비를 지급받거나, ○○부에서 주관한 ‘자가진단 산업용 ○○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사무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고 금액미상의 연구원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① 피신고자는 2017.3.경부터 2018.11.경까지 △△부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면서 학습근로자 김○○, 권○○, 윤○○, 양○○ 등 4명을 채용한 후 실제 OJT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훈련비 약 3,332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2017.10.경부터 2018.9경까지 ○○부에서 수행하는 ○○협력권산업육성사업 중 ‘자가진단 산업용 ○○ 시스템 개발’의 참여기관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지원받아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무직원인 김○○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약 779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약 4,11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2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지원금 약 783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 통보일자 : 2021. 7. 2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지원금 약 2,853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8.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및 녹취자료를 통해 부정수급 혐의 확인

20. 고용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5. 1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128호

2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7. 1.부터 2017. 12.까지 ○○도의 2017년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고용위기 컨설팅 및 광역매칭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광역매칭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신청서와 상담일지 등 관련 서류들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부와 ○○도로부터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그 밖에도 ○○부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여 보고한 후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7. 1.부터 2017.12.까지 ○○도의 2017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의 참여기관으로 고용위기 컨설팅 및 광역매칭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광역매칭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컨설팅신청서와 상담일지 등 관련서류들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75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2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고용지원사업비 및 비영리법인 보조금 약 872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7. 21.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보조금 약 285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8.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신고자가 실제로 사업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

2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1)

1분과위원회(2019. 6. 2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167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술 혁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알루미늄 ○○가스 카트리지 자동화 생산 라인 개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도 아닌 외주업체 (주)○○백스에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피신고자가 수행한 것처럼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정부 출연금 7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하였거나, 참여 연구원 허위 등록, 재료비 용도 외 사용 등 수법으로 2억 9,805만 원 이상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도 아닌 외주 업체 (주)○○백스가 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음에도 피신고자가 수행한 것처럼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정부 출연금 7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이 사건 과제 외주업체에 기술개발 외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체 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1억 8,173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연구개발과 무관한 대금 미지급분 1억 1,632만 원을 재료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9,805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6. 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연구과제 최종목표 미달성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최종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개발비 약 7억 3,433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 ※ 통보일자 : 2021. 12.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착안사항 : 피신고자 녹취록, 거래업체 지불대장 등을 통해 외주계약 체결내역 확인

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2)

1분과위원회(2019. 7. 1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181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지원 「국가 차원의 ○○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 위협 ○○리전스 분석(CTI) 및 정보 공유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및 출장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3.부터 2019. 5.까지 이○○, 신○○, 노○○, 조○○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 1억 3,94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7.부터 2018. 12.까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및 출장비 중 231만 원을 피신고자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억 4,171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6. 30.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건이 확인되어 제재 부가금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약 5,761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1년
 - ※ 통보일자 : 2021. 7.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적용법령** : 증거자료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되돌려 받은 피신고자 명의의 계좌 확인

23.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10. 21.)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305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표로, 2018. 9. 1. ○○형 창업지원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청년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어 ○○부 산하 전담기관인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8. 9. 1.부터 2019. 6. 30.까지 창업지원 사업과제를 수행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으나 개발된 앱은 창업지원 사업과제 수행 이전에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9. 1. 모바일 앱(application) 기반의 개인 간 수집용 운동화 거래 중개 플랫폼 구축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지원 사업과제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전인 2018. 6. 11.부터 앱 개발 중개업체인 '○○모야'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의 50%인 1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야'에서 개발업체로 선정한 '○○더스'에 의해 앱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야'에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2018. 9. 3. '○○더스'와 다시 직접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새로운 앱 개발이 포함된 창업지원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전담기관인 ○○진흥원을 속이고 창업지원금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2. 26.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5,000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5년
 - ※ 통보일자 : 2021. 2.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적용법령 : 참고인 진술 및 내부직원 메신저 대화기록을 통해 부정수급 혐의 확인

24.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258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7.경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친구 박○○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15~2016.경부터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자를 지인인 박○○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경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 박○○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8. 11.경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15.경부터 ○○시 ○○구 소재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지인인 박○○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의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시 ○○구로부터 약 6천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7. 30.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재산 및 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내역을 확인하여 약 6,742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7.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 확인

25.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7. 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460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콜라보(주)의 대표이사로서, 동일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것처럼 여러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교차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9. 2.경 ○○기업진흥원으로부터 '○○ 플리마켓'이라는 창업아이템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2019. 5.경 같은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것처럼 ○○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9. 2.경 ○○기업진흥원으로부터 2,3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 플리마켓'이라는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던 중, 타 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이 불가함에도 2019. 6. 1.부터 2020. 3. 31.까지가 사업기간인 ○○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선정 이력란에 위 ○○기업진흥원의 지원 내역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속여 6,8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0. 27.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중복 교부내역이 확인되어 보조금 약 6,800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1년
※ 통보일자 : 2020. 9.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사업계획서 등)를 통해 부정수급 정황 확인

26.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7. 2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496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시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오래전 허위 이혼하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전남편 피신고자2와 2019년경부터 ○○시 ○○역 앞 ○○상가에서 각각 청소부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0. 3.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2010. 2. 11. 허위 이혼하고 전남편인 피신고자2와 동거하면서 본인의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2019년경 이후에는 ○○시 ○○역 앞 ○○상가에서 본인은 청소원으로 일하고, 피신고자2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본인 및 피신고자2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이 본인과 피신고자2의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2010. 3.부터 신고일인 2020. 5. 12. 현재까지 ○○시 ○○구로부터 금액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2. 8.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생계급여 1,298만 원, 의료급여 381만 원, 주거급여 330만 원 등 총 2,008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1. 7.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피신고자들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 여부 및 차량 소유 여부 확인

27. 경영이양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8. 2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570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한국○○춘공사에 은퇴영농 형식으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자가소비를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만 경작할 수 있는 위 지원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제 ○○시 ○○면 ○○리 소재 농지 15필지(약 23,000㎡) 이상을 직접 경작함에도, 이를 속이기 위하여 경작하는 농지들을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3,545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춘공사에 은퇴영농 형식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자가소비를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만 경작할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금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정읍시 ○○면 ○○리 소재 농지 17필지 27,884㎡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이 농지들을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속이고 약 3,545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3. 16.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보조금 및 가산금 등 총 4,602만 원 환수 및 약정해지
 - ※ 통보일자 : 2021. 10. 25.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신고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내역 확인

28.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0.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07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3은 2017.경 ○○시에 마을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리 산양삼 재배’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4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2017. 8.경 ○○시 주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리 산양삼 재배’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4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구입하지 않은 산양삼 묘삼 60,000 뿌리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3은 피신고자1의 보조금 편취를 배후에서 총괄하고, 개인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며 발생한 망 구입비용 등 소요경비 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2. 24.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보조금 총 2,566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1. 7.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피신고자 계좌내역, 사업부지 사진,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검토

2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0.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10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녀 1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인 가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서, 타일 시공업을 하며 발생하는 월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2016.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동거녀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동거녀 명의로 등록하는 등 소득과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 ○○구로부터 금액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자녀 1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인 가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서, 오래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타일 시공업자로 일하면서 생기는 매월 8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2016.경부터 동거녀 최○○의 계좌로 받아 왔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도 위 동거녀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의 소득과 기준가족 수 등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 8.부터 2020. 8. 25. 신고일 현재까지 ○○시 ○○구로부터 약 4,1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이건 송치
 - ※ 통보일자 : 2021. 5. 24.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보조금 총 265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1. 1. 25.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증거자료를 통해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소득 및 자산보유 등을 확인

3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36호

2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의 전(前) 대표이사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집행한 후 자사 직원을 통해 사업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① 2016. 5. 20.부터 2017. 4. 20.까지 ○○부 및 ○○시로부터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2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시 ○○구 ○○로 ○○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17. 9. 28.부터 2020. 9. 16. 현재까지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 대표자 변○○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해 준 의혹이 상당하고, ② 신고내용과는 달리 본건 공사의 보조금 집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바, 피신고자는 2017. 6. 15. 거래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최○○과 공모하여,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대금을 부풀려 집행한 후, 2017. 10. 19. 자사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1,9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는 무관한 (주)○○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이건 송치
※ 통보일자 : 2021. 12. 7.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보조금 약 3,33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1. 3.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 착안사항 :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 확인

기초생활보장급여 편

정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보까요?



사례1 _ 본인 소득 은폐



기초생활수급자 3명은 매일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9백만 원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 _ 본인 소득 축소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공재환씨는 마트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6백만 원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3 _ 배우자 재산 은폐



기초생활수급자 나수급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4천8백만 원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농업보조금 편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수급 받아 꼭 필요한 농업인이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1 _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농지 2필지에 작물을 재배한 적이 없으면서 재배한 것으로 속이고
농업소득직불금 등을 허위로 신청하여 약 **1억 7,063만 원** 부정수급

※ '농업소득직불제도'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사례2 _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편취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설팅 사업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 4,108만 원** 편취



사례3 _ 하우스 설치 보조금 및 직불금 편취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하우스 설치
보조금 7,500만원과 직불금 등 총 **1억 1,345만 원** 편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국가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비의 주요 부정청구 사례를 알아보까요?



사례1 _ 인건비 허위청구

‘가’업체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신청하여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 4천9백만 원 부정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 _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및 과다청구

‘나’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거나 연구 기자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억2천7백만 원 부정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3 _ 동일과제 중복신청

‘다’업체 대표는 다른 공공기관에 신청한 연구과제와 동일한 연구과제임에도 서로 다른 과제인 것처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9천만 원 부정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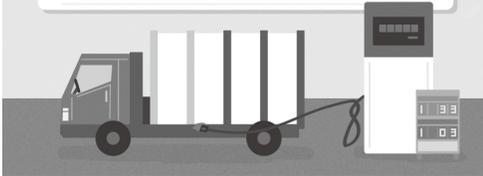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유가보조금 편

정부는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주요 부정청구 사례를 통해 알아보을까요?



사례1

택시에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

버스회사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주유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버스회사가 결제금액의 90%를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3

화물자동차주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유한 비용 및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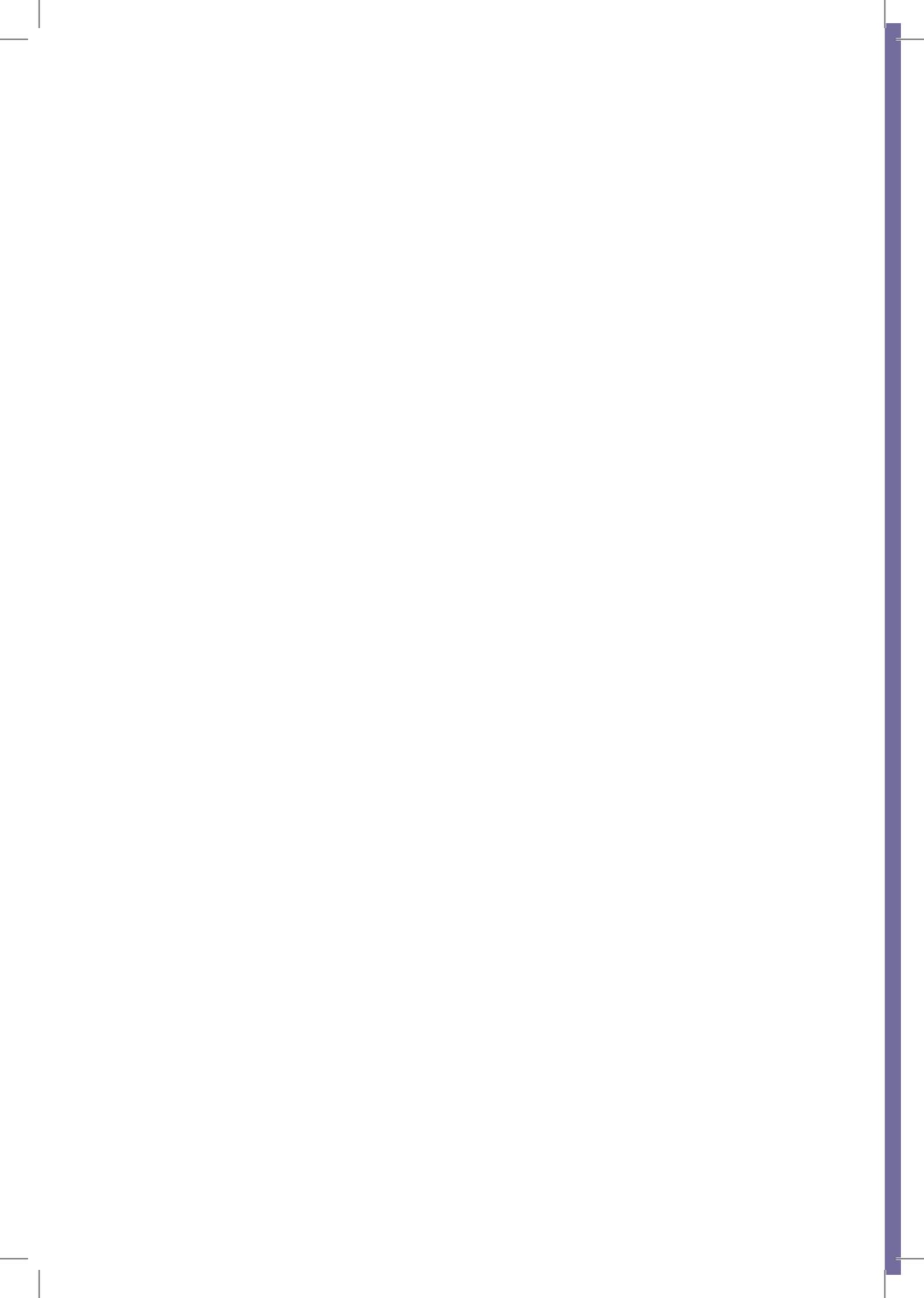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제3장

공익신고 사건

1. 2021년 공익신고 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3장
공익신고 사건

1. 2021년 공익신고 사건



1. 노인의 금품 목적 외 사용 의혹

1분과위원회(2021. 5.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93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18. 12.경 자신의 아들인 피신고자2를 이 사건 양로원의 사회 복지사로내정하여 채용하였음에도 공개 채용한 것처럼 하였고, 피신고자2는 이 사건 양로원 입소 노인들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신고자3·4는 이 사건 양로원 입소 노인들을 학대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 이 사건 양로원의 제출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양로원 방문 조사 결과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2는 이 사건 양로원 입소 어르신 29명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약 1억 6,6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3은 2017년경부터 2021. 5. 12. 신고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로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학대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4는 2020. 12. 31. 이 사건 양로원 입소자인 김옥영 어르신을 학대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1은 2018. 12.경 피신고자2를 이 사건 양로원의 사회복지사로 사전에 내정하여 채용하였음에도 공개모집한 것처럼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과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피신고자1 기소의견 송치, 그 외 피신고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조사기관
- ○○○시 :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관리 관련 시정조치 요구사항 통지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의혹

2분과위원회(2021. 10.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98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년 5월 증설 공장(RDS Rvmp) 가동으로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폐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하였으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을 절약하고자 폐놀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는 등 폐수가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거짓으로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인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의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와 ○○○도로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 위반 폐수배출시설에 행정처분(폐쇄 명령) 조치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하여 ○○검찰청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 이첩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1. 10.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199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면서 법규에서 정한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여러 유해화학물질들을 뒤섞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등 위반 관련 환경부 현장조사 시 일부 장소에 대하여 조사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에 재조사 요구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피신고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확인되어 수사 의뢰•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4.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21. 11. 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1-206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21. 3. 24. 위 장소를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서는 피신고업체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고자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아니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에 대해 주류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해당 경찰청으로 재수사 요구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 ○○청으로 기소의견 송치 및 ○○○도 ○○시로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제출자료 및 관련 판례 등



제3장
공익신고 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5. 민감정보 불법 수집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9. 9.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25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고자에게 민간단체(○○포럼, ○○네트워크 등) 소속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자택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민간단체 대표 등을 사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신고자들이 통화 또는 대화한 음성 파일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건•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6. CCTV 안내판 미설치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1. 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2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보면 피신고자는 CCTV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함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피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7. 불법의약품으로 시술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1. 1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30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대상 환자(내국인)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전에 채취한 줄기세포를 일본에서 배양 후 중국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 이곳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하고 있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서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고내용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수사결과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4조,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8.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 의혹

2분과위원회(2020. 1. 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24호

- 1. 의안개요**
- 019. 11. 9. 올림픽대로 ○○대교 분기점에서 11노****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 금지구역인 실선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사진자료 확인결과 피신고자 차량이 진입이 금지된 실선 안전지대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대상으로 확인되어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발송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14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9. 명품수선업체의 상표법 위반 의혹

1분과위원회(2020. 2. 1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88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은 물건 및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단과 상표 용구 등을 이용하여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 사업장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등을 보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을 계속적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피신고자 상대로 수사한 바 「상표법」 위반 사실 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상표법」 제10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0.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272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 12. 5. 위 업소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쌀국수 소스 등을 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쌀국수 소스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부과(784만 원)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1.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2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29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 1. 22.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해당 관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사고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미화근로자가 2020. 1. 22.에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지청에 문의한 결과, 업무담당자는 피신고자가 2020년에 산업재해로 보고한 건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신고자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700만 원)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제17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12.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2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14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2.20.9시23분경 ○○도 ○○시 **동 **지하차도에서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확인결과 피신고자는 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주행 중이 다가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통고처분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2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3. 염소 불법 도살 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0. 5. 11.)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51호

- 1. 의안개요** • 염소를 불법으로 도살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서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고내용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4. 수입 스포츠 테이프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

2분과위원회(2019. 9.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31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통신판매업체 ‘○○포티’와 ‘○○스포츠’를 운영하는 자들로 ○○ 스토어에서 중국산 스포츠테이프 제품인 ‘○○지 근육테이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행정지도 후 광고시정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61조 및 제9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5.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 의혹

1분과위원회(2020. 5.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84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3.26. ○○도 ○○시 ○○면 ○OTG 요금정산소 앞에서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영상자료 확인결과 피신고자는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였고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수사결과 「도로교통법」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반이 다소 경미하여 공익제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경고처리•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2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16. 교차로 통행방법 등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0. 5. 25.)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85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0.3.27. ○○도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운전자 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는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위반이 다소 경미 하여 공익제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경고처리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7.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 신고

1분과위원회(2020. 6. 8.)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391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화장품인 “루〇〇스 루〇팜 볼륨 앰플”을 판매하면서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지 위 상품의 원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광고내용이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검토 및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〇〇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〇〇부 :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위원회 검토의견
 - 〇〇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화장품법」 제1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18.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 등 위반 의혹

1분과위원회(2020. 6. 22.)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453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도로 위에 페타이어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출입구 우측에 패널과 도어를 불법으로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냉방설비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하나 증거자료 확인결과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페타이어와 평상 등이 도로와 인도위에 적치되어 있어 각각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조사결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47,000원)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79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9. 병원의 허위 처방전 등 발급 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0. 8. 24.)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582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 내방한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0. 무신고 숙박업 운영 의혹

1분과위원회(2020. 9. 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614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소재한 건물을 관계당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가 ○○엔비에 게시한 숙소 홍보글 및 이용자들의 후기 등과 ○○도 도내 숙박시설현황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무신고 숙박업 운영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수사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1. 산부인과병원의 아동학대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0. 12.)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684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생아의 뺨을 때리는 행위, 우는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울다 지치도록 방치하는 행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을 2명 이상씩 인큐베이터 또는 황달치료실에 동시에 두는 행위, 신생아들이 셀프수유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생아 상처가 있는 관련 사진 등도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의 「아동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300만 원)
 - 경찰청 :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검토 후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의료법」 제6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2. 건축법 위반 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0. 26.)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35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자 불상경 위 장소 3층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거나 위 주변에 주차장을 건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조립식 3층 건물이 확인되거나 그 주변 주차장이 확인되나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 필요함

3. 의결결과 • 000도 00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000도 00시 :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679만 원)

• 위원회 검토의견
- 000도 00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0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3. 가축분뇨 불법 처리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49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무단투기 및 방치함으로써 주변 농작물 피해는 물론 지하수 오염 및 악취 유발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중대한 침해를 주고 있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외부에 방치하는 현장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하는 현장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수사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9.)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53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신고자 2는 ○○약국 약국장으로 피신고자 1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피신고자 1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을 살펴볼 때, 피신고자들은「약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1조, 제44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25.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69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위조하고 이를 ○○군에 제출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사실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등을 확인해 본바, 경남06로○○호, 경남06노○○호 이외의 차량들은 피신고자 소유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부정한 방법으로 득한 변경허가 취소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고발조치•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6. 폐기물 불법 소각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72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주변에 연기, 악취 등 피해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50만원)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7.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시설기준 위반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81호

3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면서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반음식점영업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영업장 내에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7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8. 도로쓰레기 불법 투척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1. 2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783호

- 1. 의안개요** • 차량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피신고자가 쓰레기를 도로에 투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수사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벌점 및 범칙금 부과(5만원)•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29. 불법 재하도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2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805호

3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 ○○점, △△점, ◇◇점의 창호 및 철물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피신고자 2.에게 불법 재하도급 하였으며, 피신고자 2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피신고자 1.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아 창호 및 방범문 등을 불법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메일내역과 이행보증보험 내역에 따르면 피신고자 1.은 ○○건설과 ○○○○ ◇◇점 금속공사로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신고자 1.과 피신고자 2. 간의 하도급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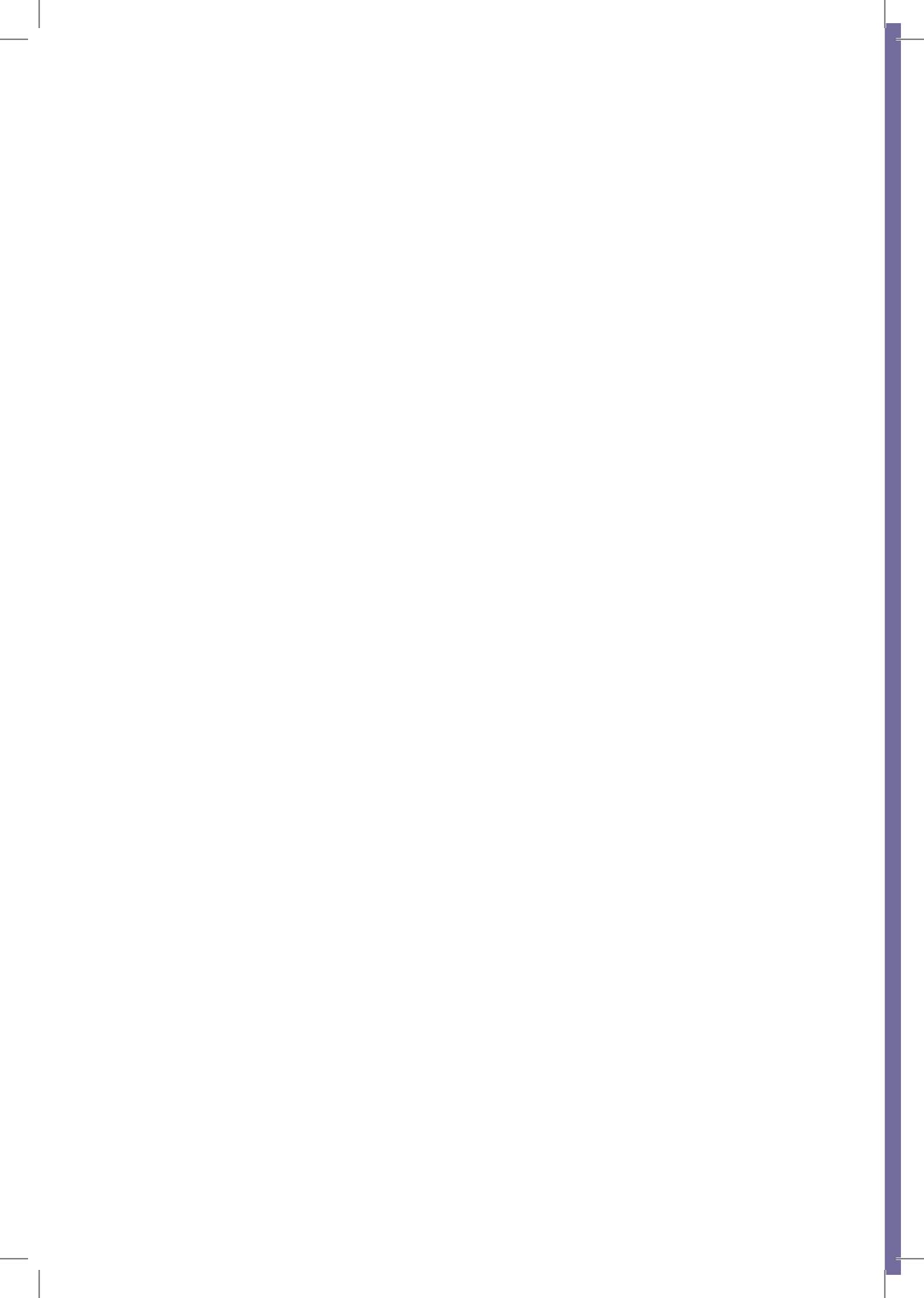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9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2. 2021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3. 2021년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4. 2021년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사례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단가 조작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추가지급)

전원위원회(2021. 1. 25.) | 보상심의위원회(2021. 1. 8.)

제2021-13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단가 조작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716만 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보상금 1,0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추가로 환수금이 발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토목용 보강재(이하 '지오그리드')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시중가의 3~4배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함으로써 약 300억 원의 공공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물품 단가 조작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또한 추가로 벌금 및 환수금 12억 7,673만 원이 발생하였고,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억 1,738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2.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4. 26.)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4. 2.)

제2021-231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1,514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일 8시간 상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식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인건비 등 6억 1,514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억 2,612만 여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4. 26.) | 보상심의위원회(2021. 4. 2.)

제2021-237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6,400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전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기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6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피신고자의 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연구개발비 5억 8,389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억 2,174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4.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4. 26.) | 보상심사위원회(2021. 4. 2.)

제2021-240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6,400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비○○○(주) 대표인 피신고자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의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1억 6,463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471만 여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5. 24.) | 보상심의위원회(2021. 5. 7.)

제2021-293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7,799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정부의 FTA 폐업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폐업지원금 2억 7,799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559만 여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6.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7. 15.)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7. 2.)

제2021-441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50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예○○공사 직원(피신고자1)이 ㈜○○대표이사(피신고자2)에게 조건부 채무면제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1에게 7,5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위 추징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250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7.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7. 19.) | 보상심의위원회(2021. 7. 2.)

제2021-442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047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예비사회적기업 대표가 배우자 명의 회사로부터 홍보물 비용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 4억 2,047만 여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9,409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8. 「농업소득직불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2. 22.) | 보상심의위원회(2021. 12. 10.)

제2021-587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업소득직불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8,297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배하는 것으로 속이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2억 8,297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659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9.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9. 27.) | 보상심의위원회(2021. 9. 10.)

제2021-598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3,444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아동발달센터 대표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부과 및 환수결정 합계 1억 3,444만 여원이 있었고,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688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9.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9. 10.)

제2021-590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0억 1,742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제조업체 대표가 수년 동안 휴직 대상 근로자들을 고용유지 조치계획 대상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이를 숨긴 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 10억 1,742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억 8,243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9. 27.) | 보상심의위원회(2021. 9. 10.)

제2021-604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466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보장기관을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5,466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639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2.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0. 25.) | 보상심의위원회(2021. 10. 13.)

제2021-687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882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학병원의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들이 실제로 치료한 것보다 보험 급여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인건비 등 6,882만 여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064만 여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3.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1. 22.) | 보상심의위원회(2021. 11. 5.)

제2021-754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6,438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 원장이 수년 동안 내원한 환자 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험공단 부담금 3억 6,438만 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8,687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4.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2. 20.)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12. 10.)

제2021-845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마을방송장비 구매입찰에서 특정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이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억 2,200만 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마을방송장비 구매입찰에서 특정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군 공무원이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수사기관(검찰)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법원에서 피신고자들에게 14억 2,200만 여원의 추징금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억 1,954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일부지급)

전원위원회(2021. 12. 20.)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12. 10.)

제2021-839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744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피신고회사의 대표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근로자 1명의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고의로 늦추어 신고하는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6,744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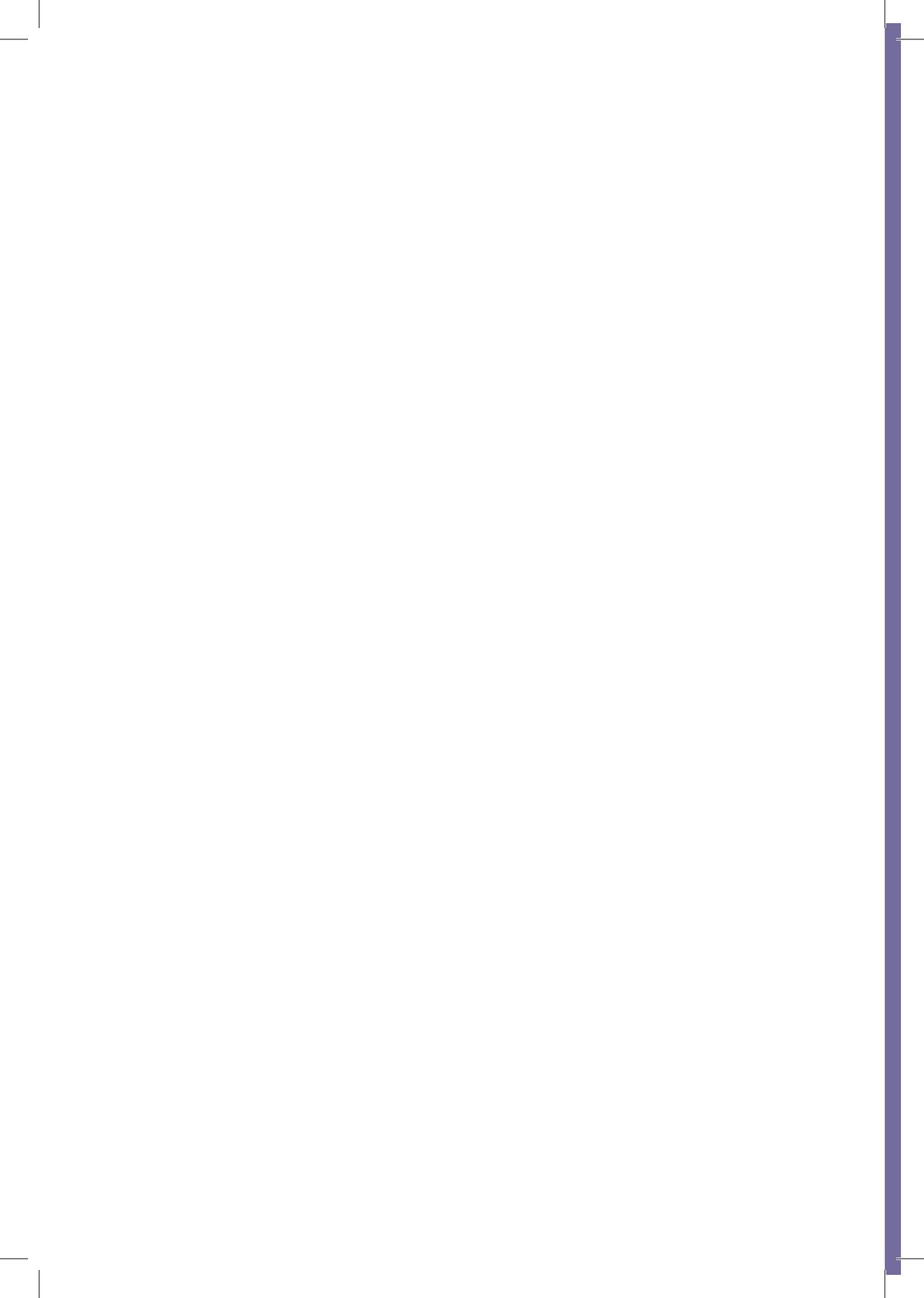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3. 결정결과

- 금 1,011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 2021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16.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4. 26.) | 보상심의위원회(2021. 4. 2.)

제2021-263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13억 7,030만 여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13억 7,030만 여원이 부과·징수 되어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2억 7,406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7.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6. 21.)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6. 4.)

제2021-400호

1. 의안개요

-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3억 8,9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53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신고한 내용 이외에 추가 적발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이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파악되어 포상금 수령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1억 2,526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8.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의 원산지 및 KS인증 허위 표시 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7. 19.) | 보상심의위원회(2021. 7. 2.)

제2021-498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태양전지모듈의 원산지 및 KS인증 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132만 여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외무역법」 및 「산업표준과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4,132만 여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826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9.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9.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9. 10.)

제2021-653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재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하게 한 의혹이 있음을 ○○부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96만 여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896만 여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79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2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2. 20.) | 보상심의위원회(2021. 12. 10.)

제2021-865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기관의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도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680만 여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기관에 벌금 375만 원 및 부정수급 환수액 8,31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은 내부 공익신고 자로서 공익침해행위 당시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등 신분상 처분(벌금형 선고)을 받았으므로 30% 감액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215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했는지 여부, 보상금 감액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2. 20.)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12. 10.)

제2021-867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의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의 건설업 운영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74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징금 5,74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 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148만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3. 2021년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22.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4. 26.) | 보상심의위원회(2021. 4. 2.)

제2021-268호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보호시설 및 장애인 생산시설을 운영하면서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시 ○○구에서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시설의 폐쇄가 이루어져 공익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시설 2곳(장애인 보호시설 및 장애인 생산시설)이 폐쇄되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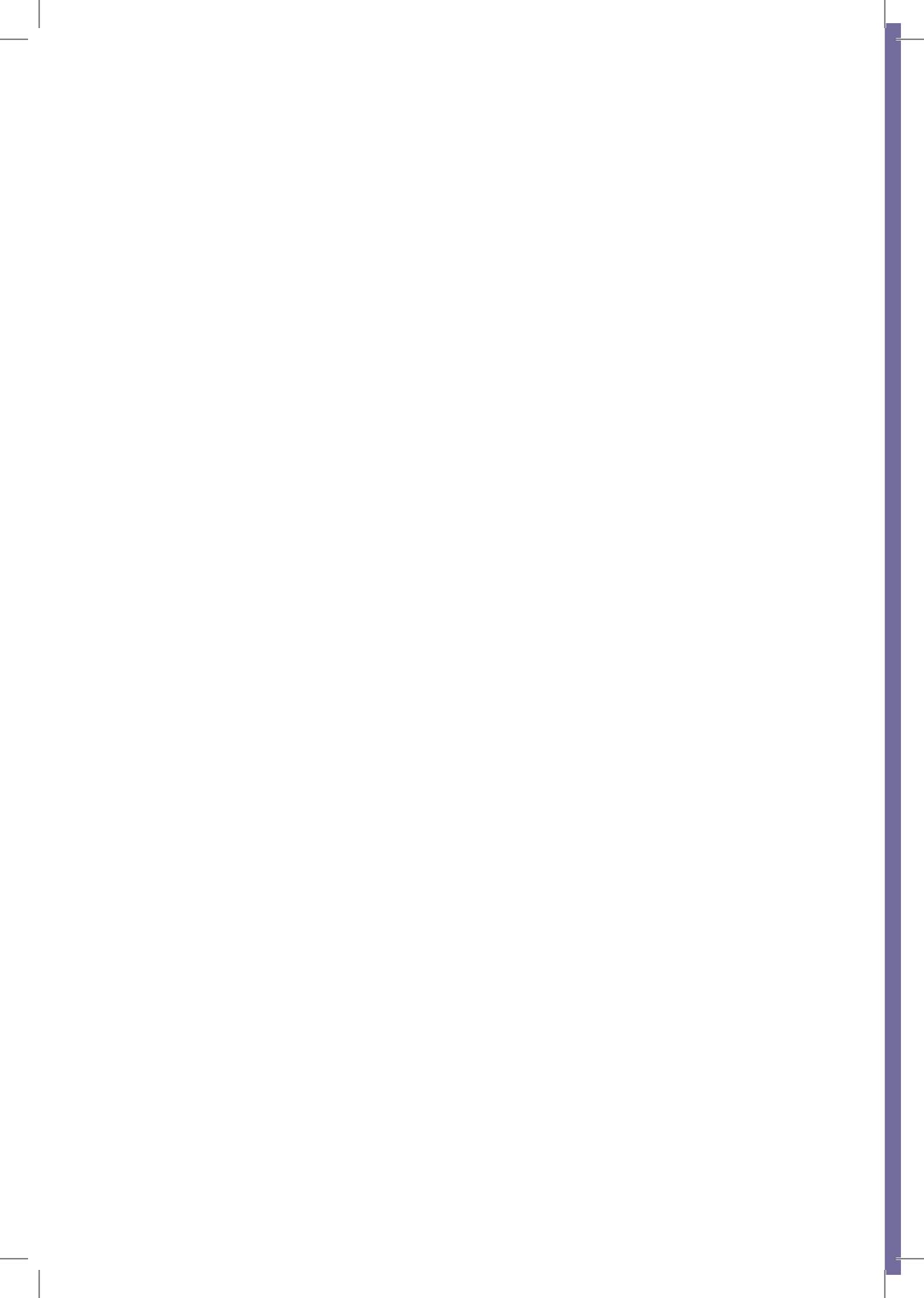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3. 결정결과

- 금 2,00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적용법령**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4. 2021년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사례



23. 「장애인복지법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21. 11. 22.) | 보상심의회위원회(2021. 11. 5.)

제2021-800호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기관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어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피신고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피신고자는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기간 임금손실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피신고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2018. 1. 31. 해고된 때부터 임금손실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의 손해 발생이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구조금을 지급함.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월평균액」이 「일용노동임금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호제4호의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위 평균임금에 따라 신청인의 임금손실액을 산정하되, 여기에서 신청인이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를 한도로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6,111만 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 **착안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손실액에 해당되는 구조금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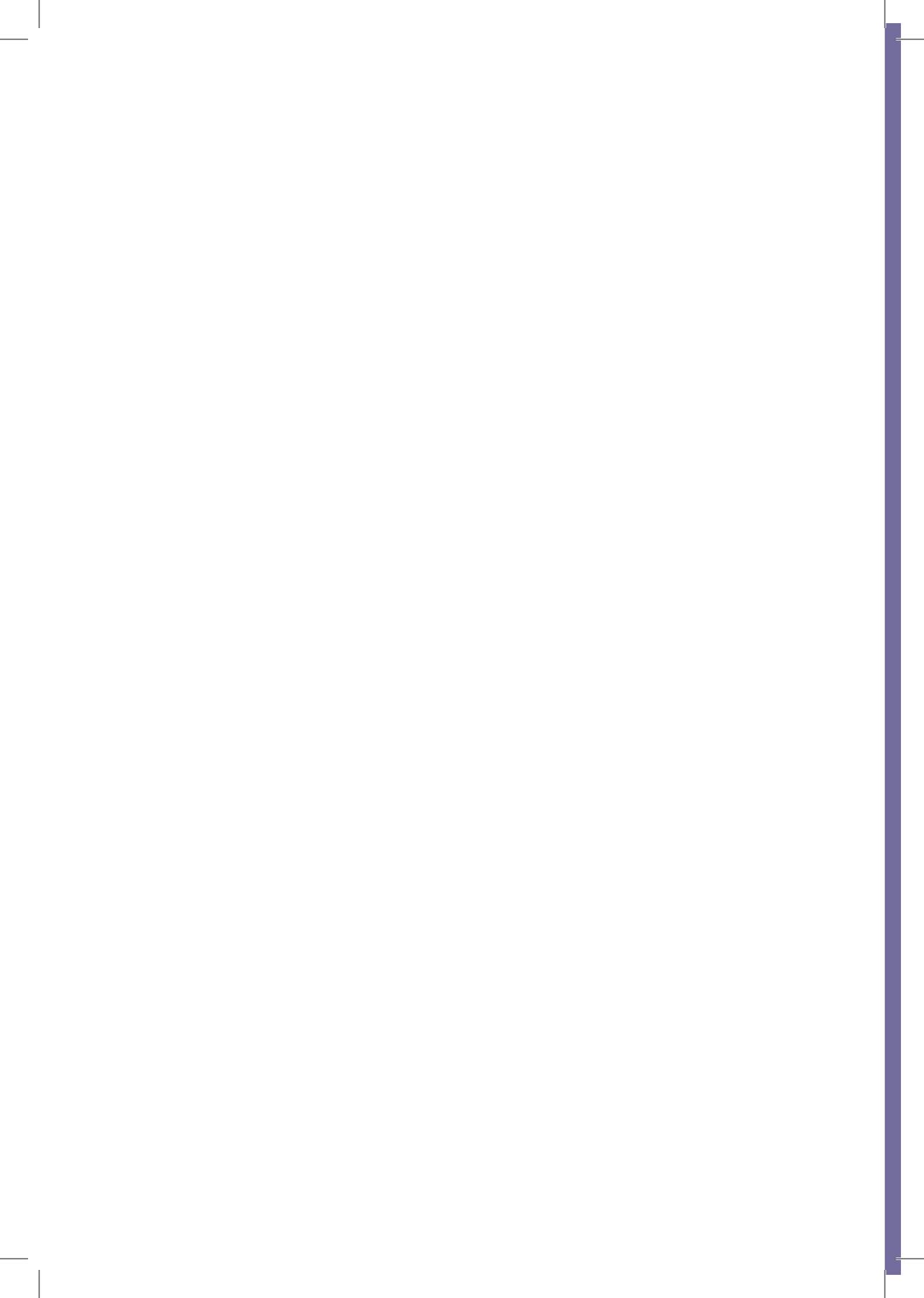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제5장

참고 자료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불임_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5장
참고자료

1. 부패 · 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 부패신고 제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①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 ~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② 신고 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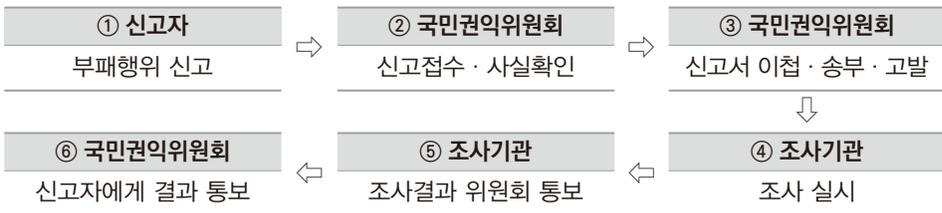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③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신고 처리절차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 → 고등법원)

2. 공익신고 제도

1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2조

2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3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4 신고 처리절차

- 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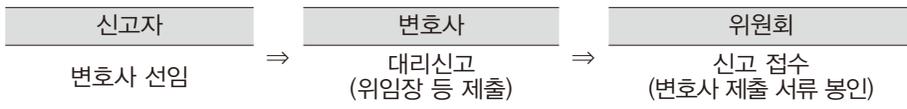
| 조사·수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익위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이송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이송

3.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개요)**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10.18.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7.5. 시행)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고, 증거자료 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도 대리 가능
-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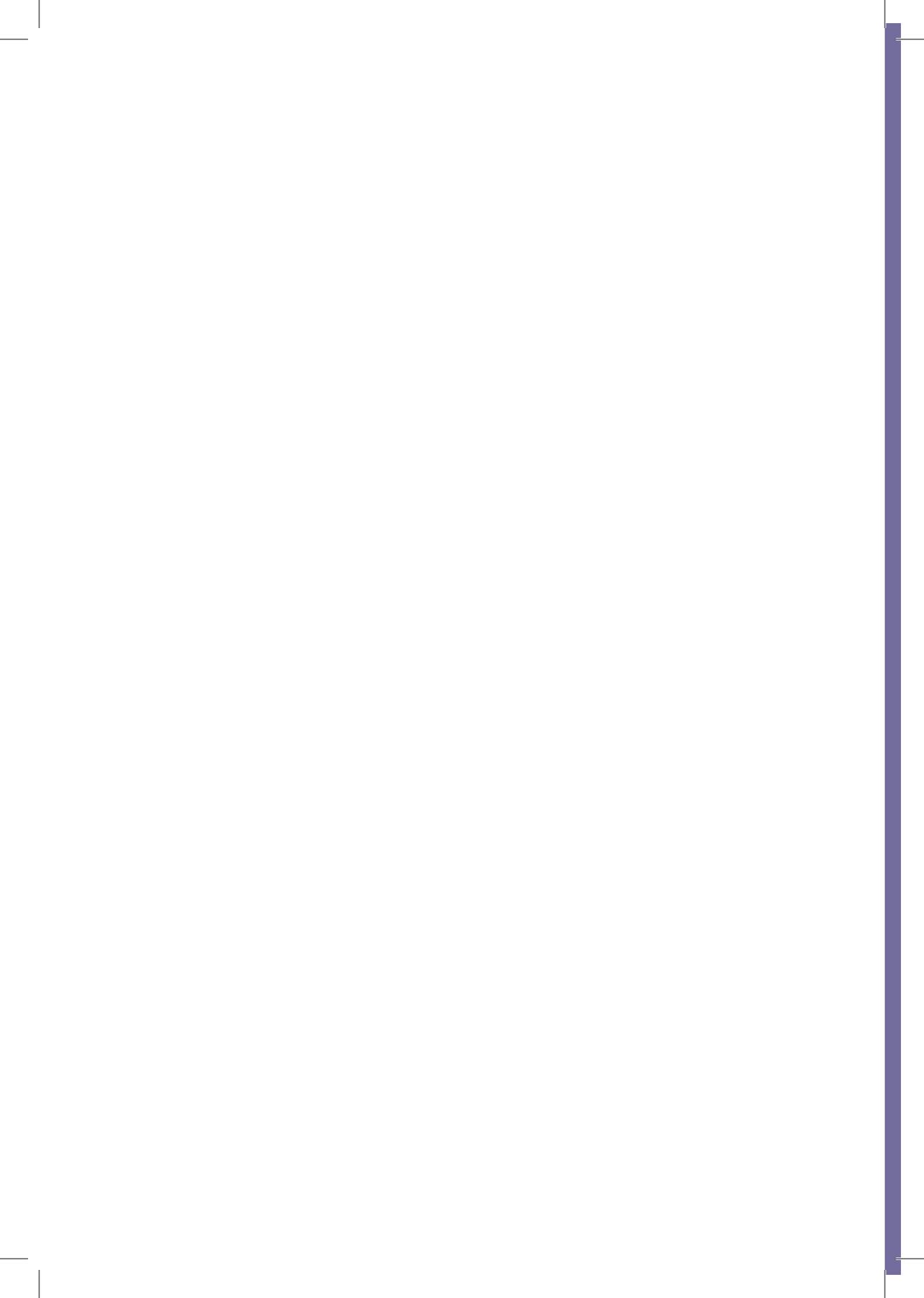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수당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
 ※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 불가







제5장
참고자료

2.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①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②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5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
 - ※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조치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분보장등조치 권고)** 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2항)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③ 신변보호

- 신고등으로 인해 신고자·협조자·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④ 책임감면

- **(책임의 감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행정처분 감면은 '22.7.5.부터 시행
- **(책임감면 요구)**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위원회 책임감면 요구 규정은 '22.7.5.부터 시행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⑤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 보장등조치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2)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5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0조)
 -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 **(보호조치 권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 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2항)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③ 신변보호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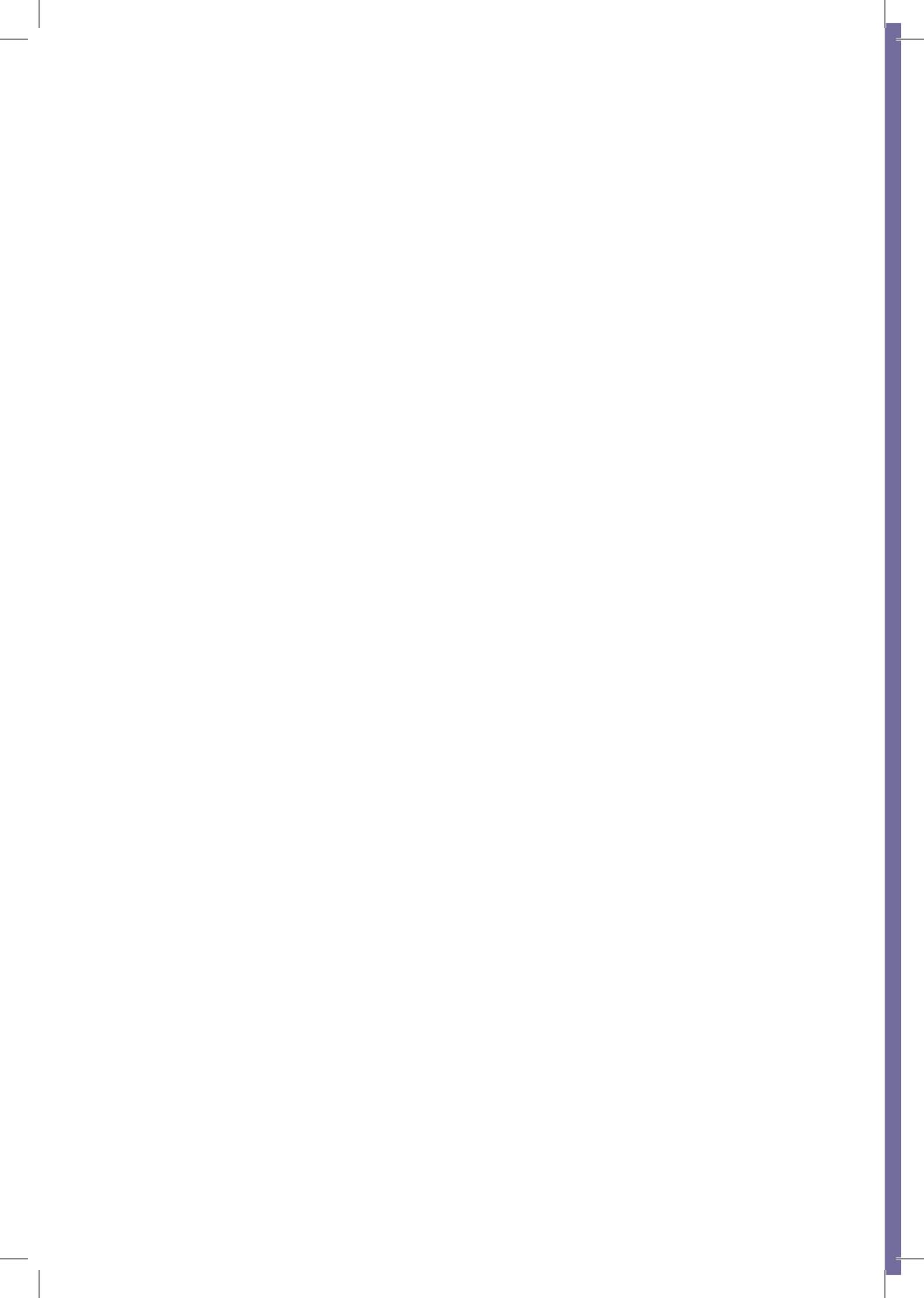
④ 책임감면

- **(책임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 제2항)
- **(책임감면 요구)**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5항)

⑤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 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5장
참고자료

3. 부패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3. 부패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신고자 보상 · 포상 · 구조금 제도

① 보상금

- (신청요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 · 증대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30억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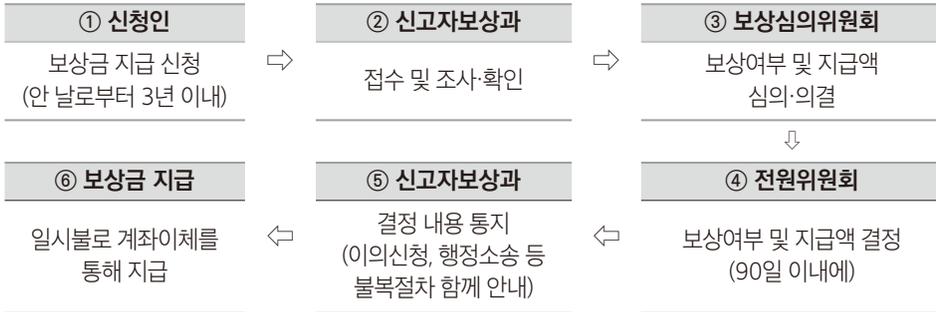
감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② 포상금

- (지급요건)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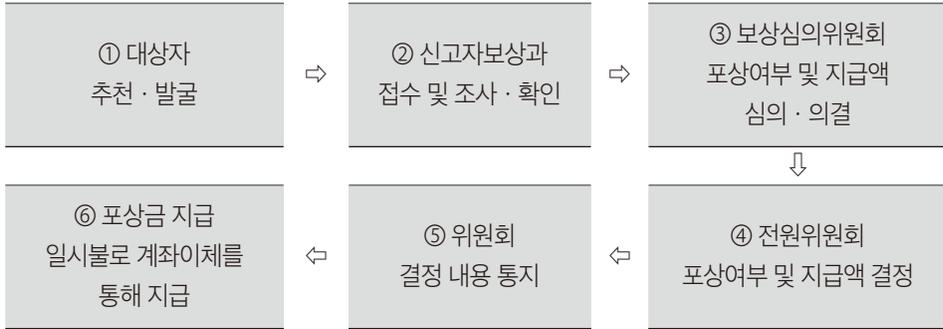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 징계 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공기관이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③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22.7.5부터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부패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은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22.7.5부터 긴급구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위원장이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① 보상금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환수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30억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고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지급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

■ **보상금 지급 절차**



② **포상금**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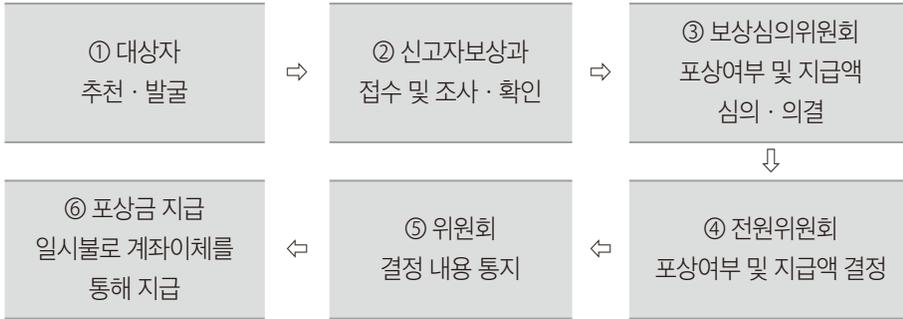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③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긴급 구조금)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청)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5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7	검역법(질병관리청)
8	결핵예방법(질병관리청)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10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11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12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3	국민영양관리법(보건복지부)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15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8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9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1	먹는물관리법(환경부)
22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2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2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2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복지부)
26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7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0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3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34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7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8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39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40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1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43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4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6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47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9	의료법(보건복지부)
5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5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7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8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60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61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6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64	학교급식법(교육부)
65	학교보건법(교육부)
66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6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8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69	환자안전법(보건복지부)
7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안 전〉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국토교통부)
4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5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6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7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8	건축법(국토교통부)
9	건축사법(국토교통부)
10	경비업법(경찰청)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13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4	공항시설법(국토교통부)
15	광산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7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부)
2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2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24	기계설비법(국토교통부)
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26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27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8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1	도로교통법(경찰청)
32	도로법(국토교통부)
33	도선법(해양수산부)
34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6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37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3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39	보안관찰법(법무부)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44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45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47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48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해양수산부)
49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1	선박직원법(해양수산부)
52	선원법(해양수산부)
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57	소방기본법(소방청)
58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59	소방장비관리법(소방청)
60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6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6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5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67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6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72	어선법(해양수산부)
7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77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7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9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81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8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84	재해구호법(행정안전부)
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87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8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0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1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93	주차장법(국토교통부)
94	주택법(국토교통부)
9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9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기상청)
97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99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1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청)
101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10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03	청소년활동 진흥법(여성가족부)
104	청원경찰법(경찰청)
1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1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법무부)
1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11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14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115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11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117	항만법(해양수산부)
11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119	해양경비법(해양경찰청)
1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2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123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환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1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2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9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21	물환경보전법(환경부)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환경부, 산림청)
25	사방사업법(산림청)
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7	산림보호법(산림청)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9	산지관리법(산림청)
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3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33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34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35	수도법(환경부)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37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8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9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40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41	악취방지법(환경부)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43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44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부)
51	자연공원법(환경부)
5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53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조정실)
5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59	지하수법(국토교통부)
60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61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62	폐기물관리법(환경부)
6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하수도법(환경부)
65	하천법(국토교통부)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7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6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1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73	환경보건법(환경부)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7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7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7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20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청)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4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28	방송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금융위원회)
30	보험업법(금융위원회)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경찰청)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7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9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40	상표법(특허청)
41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42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4	석탄산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4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4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1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3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54	에너지법(산업통상자원부)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56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57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9	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
60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61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62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6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5	유아교육법(교육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66	은행법(금융위원회)
6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6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금융위원회)
71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72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74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위원회)
76	전기통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8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1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8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85	중소기업은행법(금융위원회)
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87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88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89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91	통신비밀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9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9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5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96	해운법(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4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1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주민투표법(행정안전부)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1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22	항공사업법(국토교통부)
<이에 준하는 공익>	
1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청)
2	고등교육법(교육부)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5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
6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안전부)
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0	국가보안법(법무부)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
13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
14	국유재산법(기획재정부)
1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국방부)
17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19	군형법(국방부)
20	귀속재산처리법(기획재정부)
21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7	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2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0	노후준비 지원법(보건복지부)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5	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
3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8	방위사업법(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1	병역법(국방부, 병무청)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5	부정수표 단속법(법무부)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4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행정안전부)
4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9	사립학교법(교육부)
5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2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53	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54	예비군법(국방부)
5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5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63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6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6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
70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1	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7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74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
75	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77	청소년 기본법(여성가족부)
78	청소년복지 지원법(여성가족부)
79	초·중등교육법(교육부)
80	출입국관리법(법무부)
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82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8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이용안내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우 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 스 (044) 200-7972

인 터 넷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국민권익위원회

전 화 상 담 국번없이 1398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0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2022년 6월

본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Tel. 044)200-7697 Fax. 044)200-7943

